

교무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03. 01.

개정 2016. 03. 01.

개정 2017. 02. 13.

개정 2018. 01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의1조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함)의 전 문학사 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구성과 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행정부서장, 스쿨원장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주제)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자가 그 직을 대행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 이외의 인사에게 임석 발언을 허락할 수 있다.

제4조(재심) 위원회는 총장 (유고 시 직무대행자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구에 자문 후 재심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능)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
2. 입학, 진급, 졸업(명예졸업 포함)에 관한 사항
3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5. 장학사정 및 심의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사무) 본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